

의안번호	2125941
의 퇴 인	강성희 의원
회 답 일	2024. 1. 9.
추 계 번호	23F50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요건 변경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 차량으로 제한하고 손금산입 요건에서 업무용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1,475억원, 2029년 1,47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7,376억원 (연평균 1,4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변경(안 제27조의2)	1,475	1,475	1,475	1,475	1,475	7,376	1,475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요건 변경 - 업무용승용차 범위: (현행) 금액 요건 없음 (개정안) 시가 7천만원 미만 자동차 - 업무관련성: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용 금액 (개정안) 업무용 관련 요건 삭제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집계
 - 2024 사업연도 관련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등은 법인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에 발생
-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차량가액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파악하고, 개정안에 따라 변동하는 업무용 자동차 관련 손금산입액 변화를 산출
 - (차량 시가 7천만원 미만) 현행 기준으로 업무 외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됨
 - (차량 시가 7천만원 이상) 현행 기준으로 업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범위 변화

<현행>

차량 가액 ¹⁾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비 ²⁾	
	업무 관련	업무 외	한도 내	한도 초과
7천만원 미만	○	×	△ (업무 외 손금×)	×
7천만원 이상	○	×	△ (업무 외 손금×)	×

<개정안>

차량 가액 ¹⁾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비 ²⁾	
	업무 관련	업무 외	한도 내	한도 초과
7천만원 미만	○	○	○	×
7천만원 이상	×	×	×	×

주: 1. 음영(■)은 현행 대비 변동하는 부분을 표시

1)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1,4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가액 7,000만원 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 (2016년 이후 업무용 자동차의 감가상각방법이 5년 정액법으로 강제)

2) 자동차 1대당 연간 800만원 한도

- 개정안에 따라 업무용자동차 관련 손금산입액이 감소할 경우 해당액만큼 전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18.5%) 및 세부담이 존재하는 기업 비율(48.2%)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수효과를 산출
 -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 2020~2022년 평균 18.0%
 - 전체 신고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존재 법인 수 비율: 2020~2022년 평균 48.9%
- 향후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업무용자동차 손금산입 요건 변경에 따른 법인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7천만원 미만 업무용승용차에 한해 손금산입을 허용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취득·운용 행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현황) 국세청이 제출한 2022년 신고기준 차량가액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2022년 신고기준

(단위: 억원)

차량 가액	감가상각비 외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업무 관련	업무 외	한도 내	한도 초과
7천만원 미만	49,823	708	31,256	4,723
7천만원 이상	9,743	492	8,643	14,734
계	59,566	1,200	39,899 ¹⁾	19,457

주: 1) 업무 외 감가상각비는 제외한 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손금산입액 변화) 개정안에 따른 경우 7천만원 미만 업무용자동차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도 손금에 해당되며, 7천만원 이상 자동차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손금불산입되므로 이에 따른 손금산입액 변화를 계산

-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액 변화 (B-A): 1조 6,752억원 감소
 - 현행 기준, 손금산입액(A): 9조 9,465억원 = 59,566 + 39,899*
 - * 감가상각비 중 업무 외 비용은 제외한 금액 기준
 - 개정안 기준, 손금산입액(B): 8조 2,713억원 = 49,823 + 708 + 32,183

[표 5] 개정안에 따른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액 변화

(단위: 억원)

<현행>				
차량 가액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비	
	업무 관련	업무 외	한도 내	한도 초과
7천만원 미만	49,823	—	31,256	—
7천만원 이상	9,743	—	8,643	—
손금 산입액	59,566	—	39,899	—

<개정안>				
차량 가액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비	
	업무 관련	업무 외	한도 내	한도 초과
7천만원 미만	49,823	708	32,183 ¹⁾	—
7천만원 이상	—	—	—	—
손금 산입액	49,823	708	32,183	—

주: 1. 음영(■)은 현행 대비 변동하는 부분을 표시

1) 업무 외 감가상각비도 포함한 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2022년 신고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손금 산입액 변화(1조 6,752억원 감소)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법인세 실효세율과 세 부담 존재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계산하며,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세수효과: 1조 6,752억원 $\times$ 18.0%¹⁾ $\times$ 48.9%²⁾ = 1,475억원
 - 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 2020~2022년 평균 18.0%
 - 2) 전체 신고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존재 법인 수 비율: 2020~2022년 평균 48.9%

(2) 추계결과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 차량으로 제한하고 손금산입 요건에서 업무용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1,475억원, 2029년 1,47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7,376억원 (연평균 1,4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변경(안 제27조의2)	1,475	1,475	1,475	1,475	1,475	7,376	1,475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